

<p>- 전자금융^(주1)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p> <p>*(주1)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p> <p>- <u>외환은행</u> CD/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 수수료 면제</p> <p>- <u>다른은행 CD/ATM^(주2)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면제</u></p> <p>*(주2) 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 함</p>	<p>입금계좌를 통한 거래에 한함)</p> <p>- 전자금융^(주1)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p> <p>*(주1)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p> <p>- <u>KEB하나은행</u> CD/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수수료 면제</p> <p>- <u>다른은행 CD/ATM^(주2)을 이용한 출금 수수료 면제 (월 10회)</u></p> <p>*(주2) 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 함</p>	<p>타행CD기 인출수수료 면제횟수 제한</p>
---	---	---

「행복knowhow 연금예금 특약」(구 외환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

행복knowhow 연금예금(구 외환은행) (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 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4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상품유형

① 이 예금은 "거치후 연금식"과 "즉시 연금식"으로 구분하며, "거치후 연금식"은 1년이상 연단위로 일정 기간을 거치후 나머지 계약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시 연금식" 은 거치기간 없이 계약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② 이 예금 가입시 가입원금을 "연금지급액" 과 "만기해지금액" 으로 구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액"은 매월 가입일 해당일에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만기해지금액"의 원금은 약정된 만기일에 지급하고, 이자는 매월 가입일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③ 만기해지금액은 가입원금의 70%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중 만기해지금액 변경시에는 잔여원금의 70%이내까지 총 3회 변경 가능합니다.

제7조 원금과 이자 지급방법

① 거치기간에는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로 셈한 이자를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② 원금과 이자 지급기간에는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로 셈한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액을 매월 가입일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③ 원금과이자 지급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④ 만기해지금액 변경으로 연금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액은 소급하지 아니하고 변경신청월 다음달부터 남은 연금지급액에 대해 원리금을 재산정 하여 지급합니다.

- ⑤ 질권설정 및 압류, 법적지급제한 등 지급이 제한된 계좌는 원금과 이자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급의 제한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도래하는 최초 원금과 이자 지급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시에는 지급의 제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리 적용

- ① 이 예금의 기본금리는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리를 1년단위로 변동 적용합니다. **다만, 가입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게시한 금리를 적용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게시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예금 가입시 금리변동내역 통지를 희망하는 경우 매1년단위 금리변동시마다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로 SMS 또는 e-mail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9조 우대금리 적용

- ① 이 예금 가입시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연0.1%의 우대금리를 제8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계약기간동안 적용합니다.
1. 가입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예금주 본인명의 외환은행 예,적금 해지후 1개월이내에 이 정기에금에 가입시 연0.1%
 2. 외환은행의 은퇴설계시스템을 통한 은퇴설계 상담후 이 예금을 신규시 연0.1%
- ② 우대금리는 중도해지나 분할인출시 연단위 미경과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특별중도해지 및 특별분할인출

- ① 이 예금은 신규 가입후 1년 경과시점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나 특별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분할인출은 거치기간중에 연금지급액에 대하여 일반분할인출 포함 2회까지만 가능하며, 특별분할인출후 예금 잔액은 1백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1. 예금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치료 (증빙서류: 병원진단서 등)
 2. 예금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창업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3. 자녀의 결혼 또는 자녀명의 주택 구입,임차
(증빙서류 : 청첩장, 주택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등)
 4. (손)자녀의 해외유학 (증빙서류: 입학허가서 등)
- ②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나 특별분할인출시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포함한 약정금리, 연단위 미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며, 제9조의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일반 분할인출

- ① 이 예금은 거치기간중에 연금지급액에 대하여 특별분할인출 포함 2회까지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분할인출후 예금잔액은 1백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분할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제12조 중도해지 조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12조 중도해지

- ① 예금주가 거치기간중 중도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포함한 약정금리, 연단위 미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각각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예금주가 원리금지급기간중 중도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은 환입하지 않고 잔여원금에 대해서만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 만기후해지

거래처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직전 금리 변동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후금리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부가혜택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원리금을 입금받는 경우 입금월 다음달에 아래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리금 입금계좌를 통한 거래에 한함)

- 전자금융^(주1)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 * (주1)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 **KEB하나은행** CD/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 수수료 면제
- **다른은행** CD/ATM^(주2)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면제 (월 10회)
 - * (주2) 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 함

부칙(제정)

이 특약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칙(1)

이 특약은 2014년 3월 12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칙(2)

이 특약은 2014년 10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칙 (2)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